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 금지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1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 금지	2
---	---

※ 참고자료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	----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1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22.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 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음란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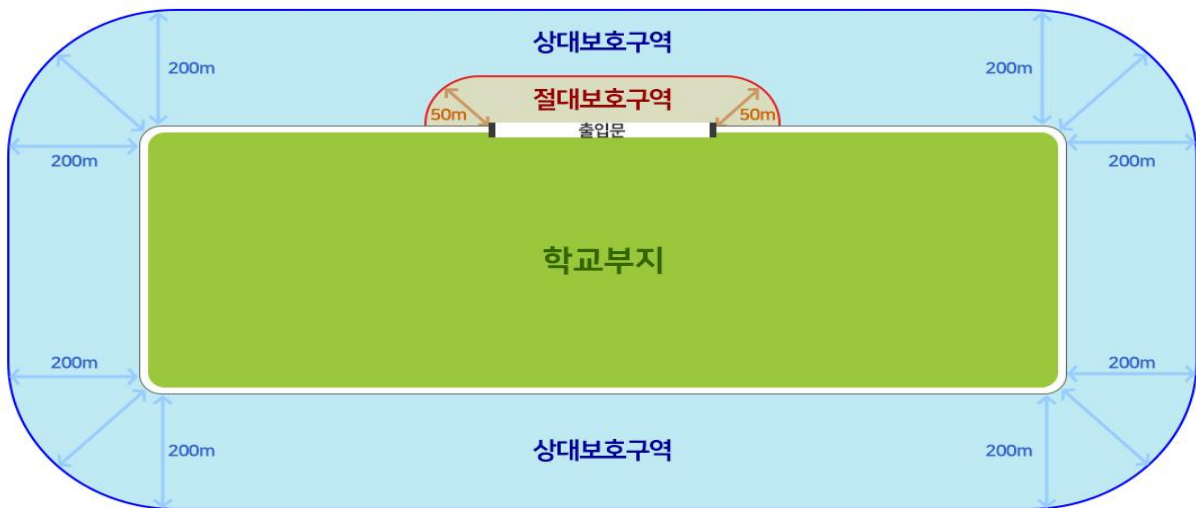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안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음¹⁾.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및

1)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을 허용하고 있음(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제9조에 열거된 모든 행위 및 시설 금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 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개정안은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구분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역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415호,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²⁾이 의결되어 해당 업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을 인용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9415호) >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종에 아래와 같은 형태의 업종 추가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하여 송출하는 영업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이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과 같이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음란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는 형태의 변종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업소가 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됨에도 교육환경법상의 금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³⁾에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극적·선정적 영상물이 등·하굣길과 생활권에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 중심 생활권을 보다 안전한 교육과 보호의 공간으로 재정립하려는 취지임.

□ 다만, 최근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연합뉴스, 강남 초등학교 100m 앞 '사이버 룸살롱'...막을 법이 없다, 2026.4.26.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13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⁴⁾, 최근의 논란 발생 초기에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이 동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가족부에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질의한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현장점검을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음.

4)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는 참고자료2 참조.**

< 성평등가족부 검토의견('26.5.7.) 주요 내용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는 타 법령 상 인·허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업소(엑셀방송 스튜디오)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서 명시한 1. 시설형태 2. 설비유형 3. 영업형태를 모두 충족
- ※ 개별로 구획된 공간에서 영상물 제작 및 유통이 이루어지며,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자료: 교육부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 따를 때에도 ‘사이버 룸살롱’ 등 영업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이미 교육환경법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로 볼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법령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시설·업종을 규제하려는 내용의 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계류법안 >

제안자	박해철(1853)	김민전(1885)	이춘석(1898)	백선희(2046)	권향엽(19416)	엄태영(19422)
제한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로서 노출·선정적 방송·매체물 제작 등이 상시적으로 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방송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	반사회·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청소년유해업소(법 제9조제13호)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2) 신설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작·촬영·방송하는 행위

제안자	박해철(1853)	김민전(1885)	이춘석(1898)	백선희(2046)	권향엽(1946)	엄태영(1942)
	생하는 시설	하는 시설	는 시설	시설		
제한 정도	상대금지				절대금지	
그 외	지자체장은 금지행위·시설에 대해 확정판결 전에 행위 중 지 또는 시설 일시 사용 중지 명령 가능	-	-	-	청소년보호 법 (권향엽 1945) 의결 전제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영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미 금지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실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교육청: 일부수정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현행법상 절대금지이므로, 부칙 중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3년)을 삭제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5. ----- ----- ----- ----- ----- ----- ----- ----- ----- -----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하여 송출하는 영업
	가) 성교 행위

나. (생 략) 6. ~ 8. (생 략)	<u>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u> <u>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u> <u>성교 행위</u> <u>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u> <u>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u> <u>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u>라) 자위 행위</u> 나.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2025. 12. 1., 일부개정